

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(폐업)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같은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지정취소(폐업) 현황

지정번호	업소명	위 치	소매인구분	폐업일자
2014-16	서희구내식당	울산 북구 강동산하지구 73BIN (산하중앙3로 142)	일반소매인	2017. 10. 26.

2. 신청 및 접수

- 가. 신청기간 : 2017. 10. 27. ~ 2017. 11. 3.
- 나. 접수장소 : 북구청 창조경제과(6층)
- 다. 지정요건 : 사업자등록 완료, 개점 상태의 점포
- 라. 구비서류
 - 1)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
 - 2) 사업자등록 사본 1부

3. 담배소매인 지정

- ▶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규정과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2항 규정을 충족하는 범위 내의 신청자 중

- 가. 신청자가 1인 경우 : 신청자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
- 나.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: 추첨에 의해 결정(추첨일시, 장소 별도 통보)

4.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: 국가유공자증명서류, 장애인등록증 또는 가족 증명서류 첨부

- 가.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(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이나 장애인 및 그의 가족이 있을 때
- 나.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우선지정 대상자간 추첨 결정
- 다.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.

5.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창조경제과(☎ 241 - 770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10월 27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